

경운대학교 국민체력100구미체력인증센터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국민체력100구미체력인증센터(이하 “체력인증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체력인증센터는 과학적 체력관리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개인별 체력 진단 및 운동 처방으로 생활체육 참여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동처방사”는 건강운동관리사(구,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또는 체육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운동 처방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운동 처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체력측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구, 2~3급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체력측정 관련 과목을 이수한 체육 관련학과 졸업을 하고 체력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체력인증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체력측정 : 연령별로 규정된 6~7개 체력항목 측정
2. 체력인증 : 체력수준 우수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1~3등급)
3. 운동처방 :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 처방 제공
4. 체력증진 교실 : 저체력자를 중심으로 주 3회 8주 과정 체력관리 지원

제5조(위치) 체력인증센터는 경운대학교 내(주소: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730번지, 13호관 203호)에 위치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직원) 체력인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직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 1명
2. 운동처방사 2명
3. 체력측정사 2명
4. 행정직원 1명

제7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우리대학교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체력인증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제3장 재 정

제8조(재정) 체력인증센터의 재정은 체육진흥공단과 구미시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 체력인증센터의 회계는 우리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체력인증센터의 회계연도는 우리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2019.09.2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일 이전에, 사업단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조치 및 선 시행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